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정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7. 17. 김현정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 7. 1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4.9.25)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4.12.3)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원안가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4.12.3)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9조, 제18조, 제31조 및 제3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황승기)

- 개정안은 현행상 사용되는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는 것임.
-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 Balance Sheet)’는 일정 시점에서 기업의 재무상태, 기업의 자산·부채 및 자본의 내용을 수록한 표를 의미함. 대차대조표는 기업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과 위험 등을 평가하는데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함.
- 개정안에서 ‘대차대조표’의 대체어로 제시하고 있는 용어인 ‘재무상태표(財務狀態表,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회계처리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대신하여 사용하고 있는 용어임.
- 당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8984호)은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국제회계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준을 변경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9408호로 개정)과 함께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용어 변경하였음.

법률 제8984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408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무제표”라 함은 주식회사가 작성하는 <u>대차대조표</u> ·손익계산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1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무제표”란 주식회사가 작성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재무상태표 나.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3조 (회계처리의 기준) ①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3조 (회계처리의 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u>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u>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 따라서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정비하려는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이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국회 법제실의 「알기 쉬운 법률용어」도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차대조표’를 정비 권고 용어에 포함하면서 순화 용어로 ‘재무상태표’를 제시하고 있음.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민국)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대차대조표상의”를 “재무상태표상의”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 중 “대차대조표상의”를 “재무상태표상의”로 한다.

제31조제5항 중 “대차대조표를”을 “재무상태표를”로 한다.

제38조제3항제1호 중 “정하는 대차대조표”를 “정하는 재무상태표”로, “기준대차대조표”를 “기준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제3호·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제5호·제6호·제7호·제9호 및 제10호 중 “기준대차대조표상”을 각각 “기준재무상태표상”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생략)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은 해당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②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상당한 기간 동안 <u>대차대조표상의</u>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 <u>재무상태표상의</u> ----- ----- ----- -----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생략)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 -----.
1. 자본총액(<u>대차대조표상의</u> 자	1. ----- <u>재무상태표상의</u> ---

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2. ~ 5. (생략)

③ ~ ⑦ (생략)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 ④ (생략)

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제외한다)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에 따라 수정한 대차대조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38조(과징금) ① · ② (생략)

-----.

-----.

2. ~ 5.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재무상대표를
-----.

⑥ (현행과 같음)

제38조(과징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대조표(이하 이 항에서 “기준대차대조표”라 한다)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한 부채액

2. 제1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비율에서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가. ~ 다. (생략)

3. 제1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5

③ -----

-----.

1. -----

정하는 재무상태표-----
-----기준재무상태표-----

2. -----

기준재무상태표상-----

가. ~ 다. (현행과 같음)

3. -----

해당 자회사 주식의 <u>기준대차대조표상</u>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눈 금액에 해당 자회사 발행주식 중 자신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u>기준재무상태표상</u>-----
7. 제20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u>기준대차대조표상</u>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한 부채액	7. -----<u>기준재무상태표상</u>-----
8. (생략)	8. (현행과 같음)
9. 제20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 채권 등의 <u>기준대차대조표상</u> 장부가액의 합계액	9. -----<u>기준재무상태표상</u>-----
10. 제20조제3항제6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도록 한 주식, 채권 등의 <u>기준대차대조표상</u> 장부가액의 합계액	10. -----<u>기준재무상태표상</u>-----